

2016.05.27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개정이유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정비
 - ②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 ③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EU측의 GATT협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산품 매장을 중소·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
 - ④ 면세업계의 비용 절감 및 물품인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국산품도 현장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
 - ⑤ 대리구매, 불법유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면세품 판매시 출국자 본인여부 및 본인명의 결제수단에 대한 확인 강화

2.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김용익 사무관 (☎042-481-7821)
- 제출기한 : 2016. 06. 14
- 제출방법 : E-mail : ysseo@customs.go.kr,

FAX : 042-481-7829

2016.05.27

3. 주요 개정내용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국산품 매장 설치를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로 전환**
 - 중소기업 제품 매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제2조)
 -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m²*이상
(중소 면세점은 10%이상 또는 288m²이상)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제5조)
 - 상품 구성,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매장 설치 규정은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부칙)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6조, 제8조~제10조)**
 -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제6조), 출국장면세점 심의를 위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폐지(제8조~제10조)

- **대리구매, 불법 국내유출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 정비**
 - 여권, 탑승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은 본인 명의인지 확인 후 판매(제15조)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6.05.27

□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 면세점 실물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신설(제16조)
- 미인도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미인도물품 해제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실무에 맞춰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제27조)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대상에 포함(제22조)
- 세관장이 재고조사 시 면세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강화(제32조)
- 주의처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할수 있도록 개정(제37조)
- 보세화물 집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제41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 신규대조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 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 174조부터 제182조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위임받은 상위법 규정 명확화</p>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 (생략)</p> <p>4. “국산품 매장”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p> <p>5~12. (생략)</p>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p> <p>5~12. (현행과 같음)</p>	<p>- 중소기업 지원 및 국가간 무역협상력 제고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중소·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p> <p>*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EU상품 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p> <p>* 새누리당 중소기업위(‘15.4), 경제관계장관회의(‘15.7)에서 ‘국산품매장’을 ‘중소제품매장’으로 변경 요청</p>
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관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관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⑪ (생략)</p>	<p>제5조(운영인의 의무)</p> <p>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관매장에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⑪ (현행과 같음)</p>	<p>- 각 항이 운영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문의 규정은 삭제</p> <p>-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 신설</p> <p>* 면적(864㎡)=[시내면세점 전체 매장면적(73,441㎡)×20%]/17 ('15.11월 기준)</p>
<p>제6조(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p> <p>① 관세청장은 보세관매장 특허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보세관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각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 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p>	<p>제6조(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p> <p>①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보세관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관세청 차장과 통관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p> <p>②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원 후보자에게 시행령 제192조의8제3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p>	<p>-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에 따라 세부 절차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관세청 차장, 부위원장은 통관지원국장 으로 하고,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 물류과장으로 하며, 본부세관 특허심사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다.</p> <p>③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 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 장이 매 회의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p>④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 안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 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p> <p>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p>	<p>하고,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대면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하려는 때에는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에게 회의 3일전 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하고, 회의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심의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및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p> <p>2.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p> <p>3.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p> <p>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 국장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⑦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 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 여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 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 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의 사유 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및 배포일정 을 조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⑧ <u>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한다.</u></p>		
<p>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p> <p>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p> <p>①~② (생략)</p> <p>③ <u>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p> <p>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 업체가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u></p>	<p>- 출국장면세점도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을 위해 검토의견서 송부</p> <p>- 특허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사전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 신청자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p>	<p>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u>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u> 사전</p>	<p>-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p> <p>② 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별도의 세부 평가표를 마련하여 심의한다.</p> <p>1~7. (생략)</p>	<p>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p> <p>② 특허심사위원회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p> <p>1~7. (현행과 같음)</p>	
<p>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p>	<p>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p>	<p>-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u>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특허심사위원회에서</u> 추가연장 여부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p>	<p>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p>	
<p>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p> <p>① (생략)</p> <p>② 출국장면세점과 <u> 시내면세점(국산품 매장 포함)에서는</u>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p> <p>③ <u>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 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 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u></p>	<p>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출국장면세점과 <u> 시내면세점에서는</u>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p> <p>③ <u>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u></p>	<p>-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 삭제 반영</p> <p>-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다. 다만, <u>관광여행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u></p> <p>④ <u>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한다.</p> <p>④ <u>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출국하는 본인인지 여부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u></p>	<p>- 여행가이드 등의 대리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여부 확인절차 강화</p>
<p>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p> <p>①~② (생략)</p> <p>③ <u>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④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p>	<p>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별지 제5-1호 서식)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 반입검사 연장신청을 위한 서식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내국물품, 제25조에 따른 양수물품, 제27조에 따른 미인도 물품과 제28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u>전자 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u>에는 생략함)</p> <p>2~4. (생략)</p> <p>⑤ (생략)</p> <p>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 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u>방법에</u> 의하여</p>	<p>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u>전자 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u> 생략함)</p> <p>2~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 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u>방법으로</u> 확인</p>	<p>- 문구 수정</p> <p>- 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확인사항을 통보한다.</p> <p>1~2. (생략)</p> <p>3. 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p> <p>⑦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 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사항을 통보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4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p> <p>⑦ 세관장은 반입검사를 위하여 업체의 성실도 -----</p>	<p>- 변경된 조항 반영</p> <p>- 문구 수정</p>
<p>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p>	<p>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p>	<p>- 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u>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u>을 해당 보세관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p> <p>③~⑥ (생략)</p>	<p>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u>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관매장에서 -----</u></p> <p>③~⑥ (현행과 같음)</p>	<p>- 국산품매장 삭제 반영,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p>
<p>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p> <p>①~③ (생략)</p> <p>④ <u> 제2항에 따라 보세관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u></p>	<p>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 제2항에 따라 보세관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5호 서식)을 거쳐 재판</u></p>	<p>- 현재 절차규정 없이 제출하고 있는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가 있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p>	<p>매할 수 있다. 다만, -----</p>	
<p>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② (생략)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p>	<p>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제1항 -----</p>	<p>- 관련 고시 개정 조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p> <p>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p> <p>①~③ (생략)</p> <p>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후 결산 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 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p> <p>⑤ (생략)</p> <p>⑥ 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p> <p>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u>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u>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세관장은 <u>재고조사시 필요한 경우</u>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p>	<p>- 재고조사시에 특허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고용 및 사회 공헌 등에 대한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p> <p>- 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p> <p>1~2. (현행과 같음)</p>	<p>- 관련 법률 개정 조항 반영</p>
<p>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1~5. (생략)</p>	<p>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6. 외교관면세점의 <u>외교통상부장관</u>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12. (생략)</p>	<p>6. 외교관면세점의 <u>외교부장관</u> 승인 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12. (현행과 같음)</p>	<p>- 정부직제 개정 반영</p>
<p>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횡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횡수로 산정하며, <u>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u> 1~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횡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횡수로 산정한다. 1~11.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p>	<p>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횡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횡수로 산정한다.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u>12. 1년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u>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 횡수 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2항제12호에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 시 경고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p> <p>- 중복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기간을 1년으로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p>1~5. (생략)</p> <p>6.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p> <p>⑤ (생략)</p>	<p>1~5. (현행과 같음)</p> <p>6.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p> <p>⑤ (현행과 같음)</p>	<p>- 중복규정으로 제3항제3호 제외 (제3항제3호가 고의에 대한 규정임)</p>
<p>제6장 보칙</p>	<p>제6장 보칙</p>	
<p>(신설)</p>	<p>제41조(세관의 관할구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라 집중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양세관, 구로비즈니스센터의 업무는 서울세관장이 수행한다.</p>	<p>-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조정</p>
<p>제41조(규제의 재검토) (생략)</p>	<p>제42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p>	<p>- 조항 변경</p>
<p><신설></p>	<p>부칙 <고시 제2016-00호, '16.0.0> 이 고시는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p>	

현행	개정안	비고
	하는 사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u>(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u>	<u>(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u> “ 불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u>(별지 제3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u>	<u>(별지 제3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u> “ 불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u>(별지 제4호 서식)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u>	<u>(별지 제4호 서식)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u> “ 불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신 설>	<u>(별지 제5-1호 서식)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u> “ 불임과 같이 신설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신 설>	<u>(별지 제25호 서식) 미인도물품 해제 신 청서</u> “ 불임과 같이 신설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별지 제5-1호 서식)

신청번호: 판매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①보세판매장명						②보세구역부호		
③ 일련 번호	④ 반입 년월일	⑤화물관리번호			⑥ B/L번호	⑦ 품명	⑧ 금액(\$)	⑨ 반입검사기한일
		MRN	MSN	HSN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 내역								
⑩ 신청일								
⑪ 연장사유								
<p>「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 세 관 장 귀하</p>					<p>「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 ○ 세 관 장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신청번호:											처리기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											1일		
①신청일자			②신청업체			③장치장소							
미인도물품 해제신청 내역													
④ 일련 번호	⑤ 교환권 번호	⑥ 여권 번호	⑦ 성 명	⑧ 국 적	⑨ 처리 구분	⑩ 구 분	⑪ 품목 번호	⑫ 상품 코드	⑬ 품 명	⑭ 규 격	⑮ 수 량	⑯ 단가 (\$)	⑰ 금액 (\$)
<p>「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관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미인도물품 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